

서울 행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구단2923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이OO
서울 구로구 000동 00아파트0단지 000동 0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오기환
피 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양OO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및 유족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민OO(이하 '망인')는 2010. 3. 22. 입대하여 제*기갑여단 정비근무대 근접지원중대(이하 '소속중대'라 합니다) 전차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10. 근무지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스스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2011. 3. 11.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및 유족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통보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생으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2010. 3.경 OO대학교 OOOO과에 입학 후 휴학하고 2010. 3. 22. 현역병으로 입대해 신병 훈련을 마친 후 2010. 6. 9. 소속중대 전차수리병으로 복무했는데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0. 7. 11.(일)부터 7. 14.(수)까지 시행될 유격훈련을 위해 2010. 7. 10. 19:00경 조기취침 준비를 하다가 생활관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21:40경 근무지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2)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 적응에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특히 소속중대 전입 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욕설을 받으면서 더욱더 힘들어 했다.

(3) 망인이 사망한 후 밝혀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암기강요, 질책 및 욕설은 다음과 같다.

○ 김OO 상병은 2010. 6.말경 소속중대 건조장에서 망인이 '선임병이 놀림을 당하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씨발, 웃었냐?"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9.까지 총 16회에 걸쳐 암기강요, 욕설 및 질책을 했다(징계: 영창 15일).

○ 김OO 병장은 2010. 7.초경 12:00경 소속중대 생활관에서 망인에게 '정신교육 중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돌았냐?"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9.까지 총 10회에 걸쳐 암기강요, 욕설 및 질책을 했다(징계: 영창 15일).

○ 강OO 병장은 2010. 7. 초경 21:00경 소속중대 생활관에서 망인에게 '군인복무규율 낭독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이병답게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질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9.까지 총 4회에 걸쳐 암기강요, 욕설 및 질책을 했다(징계 : 영창 15일).

○ 윤OO 일병은 2010. 7. 10. 13:40경 소속중대 생활관 복도에서 망인이 가톨릭신자로 성당에 가려하자 '다음날 유격에 입소할 인원이 종교활동에 참가한다'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했다(징계 : 휴가제한 5일).

○ 이OO 상병은 2010. 6월말 19:00경 소속중대 생활관에서 망인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아, 내 말이 좃같냐?"라고 욕설을 했다(징계 : 휴가제한 5일).

○ 이OO 상병은 2010. 7. 10. 13:00경 소속중대 후문 초소에서 동반근무 중인 망인에게 '암구어 미 숙지 및 벽에 기대어 서있다'는 이유로 "똑바로 서서 근무해"라며 암기강요 및 질책했다(징계 : 휴가제한 5일).

(4) 소속중대 간부들인 중대장, 근무대장도 전입신병이 병영생활에 조기 동화 및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전입당시 형식적인 면담(1회)에 그쳤을 뿐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고, 소대장도 망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관리 및 병영부조리 색출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행정정보급관도 상급 지휘관들을 보좌하여 병력을 관리해야 함에도 망인 전입 이후 면담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해 모두 징계처분됐다.

(5) 망인이 소속중대 전입 직후 실시한 군 간편인성검사 결과, 망인은 '인성 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이며 자포자기에 의한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깊은 애정과 격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시시오.'라

고 평가되고, 스트레스 진단은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증 진단은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소속중대에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5호증, 증인 윤OO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취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군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의 악화에 따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문보경 _____